

고용노동부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

CONTENTS

01 고용허가제 개요

02 가사·돌봄인력 현황 및 도입 필요성

03 해외사례

04 E-9 시범사업 계획안

05 향후 일정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01 / 고용허가제 개요

01 고용허가제 개요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개념

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* 동남아 등 16개 송출국가의 **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(E-9비자)**과, 중국 · CIS 국가 동포를 대상으로 한 **특례 고용허가제 인력(H-2비자)**으로 구분

경과

'94년부터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

→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, 인권침해 등 발생

⇒ '04.8월 고용허가제 도입*

*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 · 시행 ('04.8.17.)

01 고용허가제 개요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고용허가제 운영원칙

01 **(보충성)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**하면서 외국인력 활용

* ▲중소기업, 3D업종 중심, ▲매년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결정,
▲내국인 우선 구인노력 의무 부과 등

02 **(투명성)**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**공공부문이 직접** 외국인력 선정·도입·알선 담당

* 중앙정부 간 양해각서(MOU) 체결 → 지방고용노동관서, 산업인력공단 등이 도입 담당

03 **(차별금지)** 부당한 차별 금지, 내국인과 **동일한 노동법 적용** 등 기본적 인권 보장

도입업종

중소제조업, 농·축산업, 어업(20톤 미만), 건설업, 일부 서비스업*

* E-9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9개 업종

01 고용허가제 개요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도입규모

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귀국인원 대체수요와, 산업 신규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('22년 6만9천명 → '23년 11만명)

'23년 E-9 외국인력 도입 인원 (단위: 명)

구 분	총 계	제조업	농축산업	어업	건설업	서비스업	탄력배정
총 계	110,000	75,000	14,000	7,000	3,000	1,000	10,000

송출국가

동남아 등 16개 송출국*으로부터 외국인력 도입

* 필리핀, 몽골, 베트남, 스리랑카, 태국, 인니, 캄보디아, 우즈벡, 파키스탄, 방글라, 키르기즈, 중국, 네팔, 미얀마, 동티모르, 라오스

체류기간

4년 10개월 근무 → 출국 → 1회 재입국 가능(최장 9년8개월)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02 / 가사·돌봄인력 현황 및 도입 필요성

02 가사·돌봄인력 현황 및 도입 필요성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현황

내국인 가사·육아인력 취업자수는 **지속적으로 감소** 추세, 92.3%가 50대 이상(50대 28.8%, 60대 이상 63.5%)으로 **고령화도 심각**



* 가사 · 육아도우미 취업자(천명): ('19)156 → ('20)144 → ('21)121 → ('22)114
* 연령별 구성('22, %): (15~29) 0.6 (30~39) 0.7 (40~49) 6.4 (50~59) 28.8 (60~) 63.5

- 외국인력의 경우, 재외동포(F-4)·결혼이민(F-6) 등 **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**(H-2) 취업가능, **비전문인력(E-9)은 미허용**

02 가사·돌봄인력 현황 및 도입 필요성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

- 가사·육아인력은 대부분 **직업소개소, 지인 소개** 등을 통해 **가구에서 고용**하는 형태로 종사(노동법 적용 제외)

참고 * '22.6월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 →
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고용 및 이용자와 이용계약 체결하여 서비스 제공

필요성

내국인 종사인력 감소·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**외국인력 활용 요구 증가**

- **통근형은 시간당 15,000원** 이상, **입주형**은 내국인 **월 350~450만원**(서울기준, 중국동포 월 250~350만원) 등 **비용 상승**으로 어려움 호소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03 / 해외사례

03 해외사례

싱가포르·홍콩

- **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**
- 일반적으로 **내국인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** 적용
  → 고용주는 임금 외에 **숙소 제공, 고용부담금, 사회보장책임** 등도 부담

일본

- **민간 서비스기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 및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고, 서비스 제공** (통근형만 운영)
-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**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**

네덜란드·독일·프랑스

-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, 현지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**오페어(Au Pair)** 제도 활용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04 / E-9 시범사업 계획안

04 E-9 시범사업 계획안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※ 현재 검토 중인 안으로, 공청회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

1. 검토 배경

- 고용허가제(체류자격 E-9)를 통한 **외국인 가사인력**의 국내 도입 시범사업 추진 → 외국인 가사인력에 대한 **사회적 수용성, 실제 수요,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**을 면밀히 모색

2. 사업 개요

- **(사업 지역)**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대상
- **(도입 규모)** 100여명(추후 확정)
- **(사업 기간)** 최소 6개월 이상

04 E-9 시범사업 계획안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E-9 시범사업 계획안

2. 사업 개요

(사업 방식) 「가사근로자법」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*이 외국인 가사인력 고용 방식 검토 →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인력 공급

* '22.6.16.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 · 시행

「가사근로자법」상 서비스 제공기관 요건

01 「민법」, 「상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**법인**

02 가사근로자를 **5명 이상 상시고용** 또는 고용 예정

03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**인적 ·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** 수단 갖출 것

04 가사근로자의 **불편사항이나 고충 등 처리 수단**을 갖출 것

0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전용 사무실 등)을 갖출 것

04 E-9 시범사업 계획안

3. 외국인 가사인력

- **(도입 국가)** 신뢰성 있는 인력확보를 위해 송출국은 **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** 우선 검토
  * 필리핀: 직업훈련원(TESDA)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(NC Ⅱ) 발급

- **(자격 요건) 관련 경력 · 지식, 연령, 언어능력, 범죄이력 등 검증**
  ①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이수(실무경험자 우대)
  ② 한국어시험(EPS-TOPIK) 및 영어 면접(외부전문가 검증 참여) 통과자
  ③ 정신질환자, 마약류 중독자, 범죄이력(사유·형량 불문) 있는 경우 선발 제외

04 E-9 시범사업 계획안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3. 외국인 가사인력

(교육) 입국 전 · 후 취업교육*,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후 사내교육 실시**

* 한국어 · 문화, 노동법, 고충처리 등 (송출국 또는 고용부 지정기관)

** ① 가사·육아 관련 기술(아동학대 방지 포함) 및 **위생 · 안전 등 기초 실무**,
② **긴급상황 대응**(이용자와의 문제, 본인 신체 등 보호, 경찰 · 소방관서 통보 등)

04 E-9 시범사업 계획안

4. 가사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 내용

(이용자 범위)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~40대 맞벌이 부부, 한부모, 임산부 등

* 이용자의 소득 ·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분

(서비스 내용) 「가사근로자법」상 가사 · 육아서비스*를 통근형으로 제공

* 법 제2조: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**청소, 세탁, 주방일**과 **가구 구성원의 보호 · 양육**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

- 종일제 · 시간제 등 이용 시간은 **이용자(가구)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**

04 E-9 시범사업 계획안

5. 정부 인증기관 방식 시범사업 절차(안)

[고용부 · 공단]
송출국 현지
인력선발, 구직자 명부 구성
(자격요건 등 검증)

[고용부 · 제공기관]
서비스 제공기관
고용허가서 발급

[제공기관]
근로계약 체결
(제공기관-근로자)

[법무부]
비자(E-9) 발급

[고용부]
입국 전/후 취업교육
(송출국 지정기관 및 국내 교육대행기관)

[고용부]
서비스 제공기관에
근로자 인도

[제공기관]
서비스 제공기관
사내교육

[이용자]
서비스 이용 신청
(제공기관 앱 · 홈페이지 등)

[제공기관 · 이용자]
서비스 제공사항 확정
(서비스 유형, 제공일정 등)

[제공기관 · 이용자]
서비스 이용계약 체결

근무시작 및 서비스 제공



04 E-9 시범사업 계획안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5. 정부 인증기관 방식 시범사업 절차(안)

- **(서비스기관 선정)** 「가사근로자법」상 정부인증 서비스 제공기관 중 **공모**를 통해 사업참여 기관 선정
- **(근로계약 체결) 서비스 제공기관**(사용자)과 **외국인근로자**간 근로계약 체결
- **(서비스이용 신청)** 이용자(가구)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가사·육아서비스 이용 신청, **서비스 이용 계약** 체결
- **(근무 및 서비스 제공)** 이용계약에 정해진 **서비스 제공일정**에 따라 **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출퇴근**하면서 서비스 제공

04 E-9 시범사업 계획안

5. 정부 인증기관 방식 시범사업 절차(안)

외국인근로자

- **(근로조건)** 「근로기준법」* 준수, 최저임금 적용 등 **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** 적용

  * 다만, 「가사근로자법」에 따라 「근로기준법」상 휴게 · 휴일,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

- **(주거 · 교통)** 가사인력 **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**(임차계약 등), **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**이 부담(근로자 희망 시 자부담 별도 숙소도 선택 가능)

  참고 * **서울시 예산**(1.5억원)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외국 가사인력의 **초기정착 소요비용(숙소비·교통비·통역비 등) 지원 예정**

04 E-9 시범사업 계획안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5. 정부 인증기관 방식 시범사업 절차(안)

- **(입국 전 · 후 취업교육)** 한국어 · 문화, 노동법, 고충처리 등 교육
  - **(사내 교육)**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후 사내교육 실시
- **(고충처리)** 서비스 제공기관,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('23년 2개소 신설)를 통해 **외국인 가사인력 및 이용 가구의 고충처리 지원**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05 향후 일정

05 향후 일정

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E-9 시범사업 계획안

- E-9 시범사업 계획안 확정 (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필요, 3분기)
- 시범사업 준비, 서비스 제공('23.下), 운영성과 분석('24) 및 우리 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외국인 가사인력 활용방안 검토


감사합니다.